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14 선고 2022가단92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래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승범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9.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12,138,378원 및 이 중 4,409,313원에 대한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한 다음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3141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1. 7. 2.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은 망 E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2. 30. 피고 명의로 2021. 9.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21. 9. 8.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은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무 이외에도 F카드, G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원금만 31,344,378원(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225,753,208원을 추가하면 257,097,586원)에 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광명시 및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225,753,208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상속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2)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9. 8. 체결된 이 사건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별 지 목 록

1.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명시 제4층 호[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지층 82.16m²1층 82.16m²2층 90.85m²3층 90.85m²4층 78.11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34.09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광명시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90.10 분의 18.79

